

소상공인 사업 기반 투자계약증권 유통플랫폼 등 혁신금융서비스 28건 신규 지정 의결

- ‘소상공인(백년가게)의 사업에 기반한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을 위한 장외 거래 플랫폼’ 및 ‘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(SaaS)’ 신규 지정 28건

금융위원회(위원장 김병환)는 5월 2일 정례회의를 통해 28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였다. 이로써 현재까지 총 673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되었다.

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.(의결 결과 세부내용 [☞\[참고\]](#))

금융위는 한국ST거래의 ‘소상공인(백년가게)의 사업에 기반한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을 위한 장외거래 플랫폼’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였다. 당해 투자계약증권이 증권신고서 수리 등을 거쳐 자본시장법상 적합하게 발행된다면 이번 혁신금융서비스를 기반으로 유통성이 크게 제고될 수 있다. 이를 통해 소상공인 자금조달 수단의 다변화*, 개인투자자 투자 저변의 확대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.

* 원금상환·이자부담이 있는 “대출” → 공동사업의 손익을 공유하는 “투자”

또한, 토스증권 등 12개 금융회사의 ‘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(SaaS)의 내부망 이용’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여 내부 임직원이 MS(Microsoft)사의 M365 및 생성형 AI 어시스턴트(Copilot)와 보안, 업무 협업, 분석·자동화 솔루션을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.

<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 >

구 분	업체명	혁신금융서비스 지정
신규지정 (28건)	한국ST거래 (공동신청사: LS증권)	소상공인(백년가게)의 사업에 기반한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을 위한 장외거래 플랫폼
	토스증권 등 12개사(27건) * KB국민카드(3건), KB라이프생명보험(3건), KB증권(3건), 교보생명(3건), 미쓰이스 미토모은행서울지점, 비엔피파리바 카디프생명보험(4건), 상상인증권(2건), 신한금융지주(3건), 에이피더핀, 토스 증권,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(2건), 한국투자증권	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서비스* (SaaS)의 내부망 이용 * MS사의 M365(Copilot), 보안, 업무협업, 분석·자동화 솔루션
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	책임자	과 장	정선인 (02-2100-2530)
		담당자	서기관	마 순 (02-2100-2841)
<공동>	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	책임자	과 장	고영호 (02-2100-2650)
		담당자	사무관	이용준 (02-2100-2644)
<공동>	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	책임자	서기관	김영민 (02-2100-2573)
		담당자	사무관	변경홍 (02-2100-2975)
<공동>	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총괄국	책임자	국 장	위총기 (02-3145-7120)
		담당자	팀 장	이수인 (02-3145-7125)
			팀 장	김현돈 (02-3145-7130)
<공동>	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	책임자	국 장	임권순 (02-3145-7580)
		담당자	팀 장	김용진 (02-3145-7590)

<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(28건) >**① 소상공인(백년가게)의 사업에 기반한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을 위한 장외 거래 플랫폼(1건)**

(한국ST거래(공동신청사:LS증권))

[서비스 주요내용]

소상공인(백년가게)의 사업을 기반으로 발행된 투자계약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유통 플랫폼입니다.

[특례내용] ①자본시장법 제4조

②자본시장법 제11조

③자본시장법 제119조

④자본시장법 제373조

①투자계약증권을 투자중개업자가 중개 가능한 증권에 포함되도록 특례를 부여하고, ②투자중개업 인가 면제, ③대출 증권신고서 면제, ④장외시장 개설 시 거래소 허가 면제 등 유통플랫폼(투자중개업) 운영을 위해 필요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.

[기대 효과]

유통플랫폼을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가능해지면 투자자 환금성이 제고되어 투자편의·매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또한,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수단이 다변화*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* 원금상환·이자부담이 있는 “대출” → 공동사업의 손익을 공유하는 “투자”

[주요 부가조건]

투자자 보호 및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하여 기존 비상장주식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관련 혁신서비스 지정사례를 토대로 이해상충방지체계 마련, 투명하고 신뢰도 있는 공시시스템 구축, 일반투자자 거래한도 제한 등의 부가조건을 설정하였습니다.

② ~ ②⑧ 내부업무용 단말기에서 SaaS 이용(27건)

(KB국민카드^(3건), KB라이프생명보험^(3건), KB증권^(3건), 교보생명^(3건), 미쓰이스미토모 은행서울지점, 비엔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^(4건), 상상인증권^(2건), 신한금융지주^(3건), 에이피더핀, 토스증권,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^(2건), 한국투자증권)

[서비스 주요내용]

임직원의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 SaaS(Software-as-a-Service) 기반 솔루션을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.

[특례내용]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

금융회사 등이 내부 업무용 단말(또는 내부망)에서 외부 통신망(인터넷망)을 통한 클라우드(SaaS)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.

[기대 효과]

금융회사의 일하는 방식 혁신*을 통해 기업 전반의 업무 효율성 증진 및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됩니다.

- * ① (M365) 토스증권, 미쓰이스미토모은행서울지점, 에이피더핀
- ② (M365 Copilot) 한국투자증권
- ③ (MS사 보안 솔루션) KB국민카드, KB라이프생명보험, KB증권, 교보생명, 비엔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^(2건), 상상인증권,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, 신한금융지주^(2건)
- ④ (MS사 협업 솔루션) KB국민카드, KB라이프생명보험, KB증권, 교보생명, 비엔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, 상상인증권,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,
- ⑤ (MS사 분석·자동화 솔루션) KB국민카드, KB라이프생명보험, KB증권, 교보생명, 비엔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, 신한금융지주

[주요 부가조건]

망분리 예외를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의 정보유출 및 침해사고 등에 대비하여 지정 기업들은 침해사고대응기관(금융보안원 등)의 보안성 평가 결과 '적합'을 획득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SaaS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며, 망분리 예외 허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에 대한 보안대책*을 수립·이행하여야 합니다.

- * ①내부 단말기, ②내부망↔SaaS 연계구간, ③SaaS 서비스 관리, ④SaaS 운영정책 등의 항목을 포괄한 사용자 계정 및 접근통제, 네트워크 구성, 개인(신용)정보 업로드 여부 및 모니터링 대책, 망분리 예외에 대한 보안대책 등